발	간	티이	록	번	Ì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

2016. 2. 1.



목	차
---	---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

1.	일	반・ス	저온칭	·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1
2.	포	장재	보관	료	
3.	헌.	포장지	ㅐ 관리	H]	
4.	양	곡 ;	가 공	임	
5.	포	;	장	입	7
6.	ઙૺ	곡가	공보험	료	
7.	정	부관i	믜양곡	ーフ	├공비용의 계산방법8
8.	일	반	하 역	료	9
9.	톤	백	아 과	율	
10.	항	만	하 역	료	
11.	철		۲ ۲	임	
12.	E	럭	아닌	임	
13.	해	송	안	입	22

1. 일반·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가. 일반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단위 : 원/1일 톤당)

																 ,	
	특 지			갑 지			을지					<u> </u>	보관				
	특급	1급	2급	3급	등외	특급	1급	2급	3급	등외	특급	1급	2급	3급	등외	야적	보험료
쌀 현미	226.4	212.3	178.8	158.8	139.3	200.2	188.3	161.0	140.3	122.9	182.2	171.0	146.1	127.5	111.1	89.2	0.63
Й	175.3	164.2	141.3	122.7	107.3	155.0	145.6	124.8	108.0	94.7	140.9	132.2	113.6	98.5	86.4	68.7	0.49
보리쌀 눌린보리쌀 콩 옥수수 밀가루	180.6	170.2	145.6	126.4	111.4	159.8	150.3	128.6	112.2	98.0	145.6	136.2	116.8	101.9	89.1	71.2	0.49
겉보리 쌀보리 밀	131.3	123.4	105.5	92.0	80.6	116.3	108.9	93.3	80.9	70.9	105.8	98.8	84.6	73.8	64.3	51.2	0.33

나. 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단위 : 원/1일 톤당)

	특 지	갑 지	을 지	보 관 보험료
쌀, 현 미	266.9	236.7	215.1	0.63
벼	206.5	183.1	166.3	0.49
보리쌀, 눌린보리쌀, 콩, 옥수수, 밀가루	214.0	188.9	171.4	0.49
겉보리, 쌀보리, 밀	155.0	136.9	124.2	0.33

- (1) 이 표의 양곡보관료 및 보험료는 1일 톤당 요금이며, 보관일수의 계산은 정부관리양곡 보관도급계약서 제6조에 의한다.
-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지역의 보관료에 대하여는 기본 요율에 5.0%를 가산 적용한다.(단, '95. 3. 1일 이후부터 관할구역 변경 으로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은 제외한다.)
- 이 경우 단위당 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절사한다.
- (3) 중량계산은 실 양곡 중량으로 하되, kg까지로 한다.
- (4) 양곡 보관보험료는 지역과 등급차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며,정부소유 보관창고에 보관된 양곡에도 양곡 보관보험료를 지급한다.
- (5)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특 지 : 특별시 및 광역시
 - 갑 지 : ① 시 지역, ② 주요 항구도시 : 장항
 - 을 지 : 상기 지역을 제외한 전(全) 지역
- (6)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7) 이 요율은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포장재 보관료

(단위 : 원/속)

7. 1	단 량	보 관 료				
구 분	단 량	가공공장분	야 적			
P.P 대	200 마	14.3	7.0			
지 대	200		4.0			
P.E 대(10kg들이)	700	9.5	4.8			
P.E 대(4kg들이)	1,000	5.7	2.8			
헌 P.P 대	200	7.3	4.0			
톤백 P.P 대	20	21.7	10.7			
헌 톤백 P.P 대	10	11.3	6.2			

<u>부대조건</u>

- (1)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 보관하는 포장재 보관료는 입고 다음날부터 사용을 위해 출고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이외사항 보관료에 대하여는 양곡가공도급계약서 제13조에 규정한 포장재 보관료를 적용한다.
- (2) 이 요금은 1일당 요금이다.
- (3) 포장재중 불용품에 대하여는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 (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5) 이 요율은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헌포장재 관리비

(단위 : 원/매)

구 분	단 위	관 리 비
헌 P·P 대	1매	16.0
헌 톤백 P・P 대	1 매	95.1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관리비는 정부관리양곡 헌 포장재 관리요령에 따라 품위별로 선별 분류 보관한 헌 포장재에 적용하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 지급 하는 비용이다.(품위선별 보관을 하지 아니한 헌 포장재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이 표의 관리비는 포장재의 등급이나 가용, 불용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 (3)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4) 이 요율은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양곡가공임

(단위 : 원/제품 톤당)

	नो छ न	z	<u>01</u> -		Z			
가 공 구 분	제품곡	5	원 료 곡 종		- Ho	A등급	B등급	C등급
정 상 가 공	쌀			벼		93,979	89,735	84,896
	쌀		वे		Ъ	83,356	79,591	75,299
	현	वि		벼		51,384	49,063	46,417
	보 리	쌀	겉	보	리	190,117	181,530	171,741
	눌린보리	쌀	겉	보	리	211,873	202,303	191,393
수분조절도정	보 리	쌀	쌀	보	핀	141,120	134,746	127,480
	눌린보리	쌀	쌀	보	리	180,255	172,113	162,832

- (1) 이 표의 가공임은 포장방법과 관계없이 지불하며, 원료의 하차료 및 입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2) 이 표의 수분 조절도정 가공임은 쌀보리를 원료로 하여 수분조절 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이 표의 가공임에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작업 할증, 상여금, 퇴직금 및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5) 이 요율은 2016년 2월 1일 가공분 부터 적용한다.

5. 포 장 임

(단위 : 원/제품 톤당)

포 장	규 격	포 장 임
P·P 대	40kg 들이	5,554
P·P 대	20kg 들이	15,054
지 대(봉합식)	20kg 들이	14,823
P·E 대	10kg 들이	16,008
P·E 대(외포장 포함)	4kg×5개 들이	31,541
P·P 대	5kg 들이	19,019
P・P 대(톤백)	5kg×180개 들이	25,274
P・P 대(톤백)	1,000kg 들이	6,597

- (1) 이 표의 포장임은 포장 내용물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제품의 상차료 및출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2) 이 표의 포장임에는 포장용지의 하차 및 입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이 표의 포장임에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작업 할증, 퇴직금 및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5) 이 요율은 2016년 2월 1일 포장분 부터 적용한다.

6. 양곡가공보험료

(단위 : 원/제품 톤당)

제 품	원 료	보 험 료		
쌀	벼	521		
쌀	현 미	584		
현 미	벼	504		
보리쌀, 눌린보리쌀	겉보리, 쌀보리	309		

<u>부대조건</u>

- (1) 이 표의 보험료는 원료의 입고후 제품출고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다만, 가공중지와 제품의 인수기일 경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관보험료를 적용한다.
- (2) 이 표의 보험료에는 정부양곡가공화재공제특약협정서 제1조 1호(공제 목적물의 범위)에 규정된 일체의 물품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 (3) 이 요율은 2016년 2월 1일 가공분 부터 적용한다.

7. 정부관리양곡 가공비용의 계산방법

 양곡관리관이 가공을 요청한 양곡에 대한 가공비용의 계산은 가공임, 포장임, 원료의 하차·입고료 및 제품의 출고·상차료를 각각 실 양곡 중량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실 양곡중량을 kg단위까지 계산한다.

8. 일반하역료

1) 양 곡

(단위 : 원/톤)

하 목	-	요 율
1. 철 도 발 송 :	료	5,346
2.철도도착	근	5,459
3. 상 차	료	3,136
4. 하 차 .	료	2,844
5.입 고 .	료	3,833
6. 출 고 .	료	3,833
7. 매입장소입고.	료	13,807
8. 매 입 직 송 상 차 .	료	9,110
9. 매입장소경비료(당일	<u> </u> 입고)	247
10. 선 별 .	료	2,844
11. 이 적	료	2,844
12. 이 송	료	
- 20m초과 50m까지]	2,844
- 50m초과 20m마디	}	1,398
13. 검 근 .	료	2,844
14. 복 포 훈 증 소 독	н]	796
15. 양곡중량 시험작업	∃]	5,098
16.호송.	료	2,965

2) 포장재

(단위 : 원/속)

항 목		P·P대 20kg들이		P·E대 10kg들이	P·E대 4kg들이	₽・P대 톤백들이
1. 철도발송료	172.6	97.4	222.1	159.6	109.2	153.7
2. 철도도착료	176.5	99.6	226.6	163.1	111.4	157.0
3. 상 차 료	100.7	56.9	129.6	93.2	63.7	89.6
4. 하 차 료	91.7	51.4	117.6	84.8	57.9	81.7
5.입고료	123.2	69.4	158.5	114.0	77.9	109.7
6. 출 고 료	123.2	69.4	158.5	114.0	77.9	109.7
7. 이 적 료	91.7	51.4	117.6	84.8	57.9	81.7
8. 이 송 료						
- 20m초과 50m까지	91.7	51.4	117.6	84.8	57.9	81.7
- 50m초과 매 20m마다	44.9	25.3	57.9	41.7	28.5	40.0
9. 검 수 료	91.7	51.4	117.6	84.8	57.9	81.7

- (1) 이 표의 요율에는 일기불순,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인한 할증과 노무자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2)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 양곡중량으로 하며, kg까지로 한다.
- (3)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보관료』 항목의 단량을 기준으로 한다.
- (4) 철도 수송시의 처리는 일관작업으로 한다. 다만, 철도발송시 호송인을 붙일 경우에는 별도로 이 표의 호송료를 적용한다.
- (5) 매입장소 입고료는 매입장소의 보관창고로 입고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매입장소와 매입양곡을 보관한 창고가 200m이상의 거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일반하역료를 적용한다.
- (6) 매입장소 입고료는 50m이내의 이송료가 포함되어 있다.
- (7) 매입장소 경비료는 매입장소와 보관창고의 거리에 관계없이 매입당일 입고시키는 양곡과 관련하여 경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당일 매입물량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 (8) 매입 직송상차료는 순회매입 또는 매입장소의 창고여석 부족 등으로인하여 매입물량을 타 지역 창고로 직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9) 선별료와 이적료는 중복하여 지불하지 않는다.

- (10) 이송료는 인력운반임으로 20m 초과 200m까지 이송 작업할 때 적용하며,
 20m 이내의 이송료는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송거리 이내라도 양곡관리관(분임양곡관리관 포함)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운반구를 사용 할 수 있다.
- (11) 양곡하역작업에서 발생되는 파손포대 개포장시 비용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의 재검사 확인에 따라 별도로 실비 정산한다.(파손포대 개포장은 작업량의 0.3%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12) 양곡 훈증소독에 필요한 약품은 관급으로 한다.
- (13) 개포장 작업도중 보관된 양곡에 대하여는 실제 일수에 해당하는 보관료를 지급한다.
- (1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15) 이 요율은 2016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 부터 적용한다.

9. 톤백요율

(단위 : 원/톤)

항 목	요 율
1. 톤백 매입료	5,328
2. 톤백 매입장소 입고료	5,180
3. 톤백 직송상차료	4,747
4. 톤백 상차료	2,067
5. 톤백 하차료	2,067
6. 톤백 입고료	3,585
7. 톤백 출고료	3,585

- (1) 부대조건은 "8. 일반하역료 1)양곡』을 적용하되, 톤백과 관련없는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이 요율은 2016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 부터 적용한다.

10. 항만하역료

1) 양 곡

(단위 : 원/톤)

구 분	항 목	요 율
일 반 항	적 선 료	9,257
코 민 영	양 육 료	8,871
머러 자치 그사 미사 모고치	적 선 료	9,516
보령, 장항, 군산, 대산, 목포항	양 육 료	9,109
인천항	적 선 료	9,516
1 인신영	양 육 료	9,109
퍼테 다기차	적 선 료	9,516
평택, 당진항	양 육 료	9,109
비시치 미 계즈 거치	적 선 료	7,927
부산항 및 제주 전항	양 육 료	7,303
공 통	경 비 료	227

2) 포 장 재

(단위 : 원/속)

· 한 년	<u>1</u> 1	P. P대 40kg들이	P. P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P. E대 10kg들이	P. E대 4kg들이	P. P대 톤백들이
일 반 항	적선료	941	360	626	219	184	1,609
일 반 항	양육료	899	343	601	213	178	1,538
보령, 장항, 군산,	적선료	968	369	643	228	190	1,654
대산, 목포항	양육료	923	354	616	217	181	1,579
인 천 항	적선료	968	369	643	228	190	1,654
인선정	양육료	923	354	616	217	181	1,579
퍼태 다기하	적선료	968	369	643	228	190	1,654
평택, 당진항	양육료	923	354	616	217	181	1,579
부산항 및	적선료	803	308	537	190	158	1,374
제주전항	양육료	741	283	495	176	146	1,267
공 통	경비료	23.4	8.8	15.5	5.4	4.7	39.6

- (1) 이 표의 요율에는 일기불순,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할증과 선적할증 및 근로자 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
- (2) 인천항의 경우 부잔교 이송 작업시에는 톤당 1,460원을 가산 적용하되,벨트 컨베이어에 의한 이송 작업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 양곡중량으로 하며, kg까지로 한다.
- (4)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
 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보관료』 항목의 단량을 기준으로 한다.
- (5) 적선 양육시의 처리는 일관작업으로 한다.
- (6) 각 단계별 작업 기본거리는 30m로 한다.
- (7) 경비료는 양곡 또는 포장재를 적선, 양육과 관련하여 경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 1기(15일)당 적용하며, 양곡 또는 포장재를 직반출입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양곡 하역작업에서 발생되는 파손포대 개포장시 비용은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의 재검사 확인에 의하여 별도 실비 정산한다.(다만, 파손포대 개포장은 작업량의 0.3% 범위 내에서 인정)

- (9) 일반항 요율 적용시 다음지역의 경우는 다음의 할증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이천광역시 옹진군 및 강화군, 경북 울릉군, 전북 부안군 위도면, 군산시 오식도동, 전남 여수시 남면·화정면·돌산면, 고흥군 봉래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군외면 제외) 지역 내의 적선 양육분 : 100%

• 전남 신안군 적선 양육분 : 150%

- (10)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11) 이 요율은 2016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 부터 적용한다.

11. 철 도 임

 한국철도공사 화물운송 통지서의 표시액을 지불한다. 다만, 호송료는 별도 책정한 일반하역료에 의하여 지급하고 한국철도공사 화물운송 통지서의 표시액에서 제외한다.

12. 트럭운임

1) 국내양곡

(단위	:	원/톤)
-----	---	------

거리대별	포 장 물	산 물
10km 까지	6,520	6,480
20km "	8,450	8,390
30km "	10,280	10,230
40km "	12,050	11,990
50km "	13,350	13,280
60km "	14,230	14,160
70km "	15,190	15,120
80km "	16,100	16,020
90km "	16,960	16,890
100km "	17,550	17,460
120km "	17,800	17,720
140km "	18,930	18,830
160km "	19,920	19,820
180km "	20,830	20,730
200km "	22,460	22,360
230km "	22,730	22,620
260km "	23,830	23,730
290km "	26,010	25,890
320km "	26,190	26,060
350km "	28,310	28,160
380km "	29,330	29,190
410km "	31,470	31,310
460km "	33,770	33,600
510km "	35,830	35,660
510km초과 매 50km마다	2,090	2,080

-

2) 수입양곡

(단위 : 원/톤)

거리대별	포 장 물	산 물
10km 까지	6,960	6,920
20km "	8,770	8,730
30km "	10,470	10,420
40km "	12,130	12,070
50km "	13,540	13,470
60km "	14,370	14,290
70km "	15,290	15,210
80km "	16,160	16,070
90km "	16,980	16,900
100km "	17,510	17,420
120km "	17,940	17,850
140km "	19,050	18,960
160km "	20,230	20,130
180km "	21,220	21,110
200km "	22,860	22,740
230km "	23,050	22,940
260km "	24,110	23,990
290km "	26,210	26,070
320km "	26,370	26,230
350km "	28,400	28,260
380km "	29,420	29,270
410km "	31,460	31,300
460km "	33,490	33,320
510km "	35,520	35,340
510km초과 매 50km마다	1,910	1,900

3) 포장재

(단위 : 원/속)

거리대별	P. P 대 40kg들이	P. P 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P. E 대 10kg들이	P.E 대 4kg들이	P. P 대 톤백들이
10km 까지	288	161	368	264	181	255
20km "	371	209	477	343	235	330
30km "	453	254	580	418	286	403
40km "	529	299	681	490	335	471
50km "	587	332	755	543	370	522
60km "	626	354	806	578	396	557
70km "	668	376	859	617	422	595
80km "	708	399	910	656	449	630
90km "	747	420	959	691	472	664
100km "	772	435	993	714	488	687
120km "	782	442	1,007	724	495	697
140km "	833	470	1,070	770	525	742
160km "	875	494	1,125	810	553	779
180km ″	915	516	1,178	847	578	815
200km "	988	557	1,270	913	625	879
230km "	1,000	564	1,285	925	632	890
260km "	1,048	592	1,348	968	663	932
290km "	1,143	646	1,471	1,058	723	1,018
320km "	1,153	651	1,481	1,065	728	1,026
350km "	1,244	702	1,600	1,152	786	1,108
380km "	1,289	727	1,658	1,193	816	1,148
410km "	1,384	780	1,780	1,279	875	1,232
460km "	1,484	838	1,909	1,374	938	1,321
510km "	1,575	888	2,026	1,457	997	1,401
510km초과	93	52	119	85	58	82
매 50km마다						

- (1) 수입양곡 운송임은 입항지에서 최초 보관창고까지만 수입양곡 운송요율을적용하며, 그 이후의 운송임은 국내양곡 운송요율을 적용한다.
- (2) 동일 거리 내에서는 동일 운임을 적용한다.
- (3) 유료도로 통행료 및 도선료는 실비를 지급하되, 왕복시 편도에 타 화물을수송할 경우에는 편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수송거리는 km까지 계산하되, 1km미만은 4사 5입한다. 다만, 전 수송거리가 1km미만인 경우에는 1km로 계산한다.
- (5)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 양곡중량으로 하고 kg까지로 한다. 다만 총 적재량이2톤 미만인 경우에는 2톤으로 계산한다.
- (6) 우마차에 의한 양곡수송 운임은 본 운임에 준하되, 중량은 실 적재량을기준하며, 이 부대조건 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7)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보관료』 항목의 단량을 기준으로 한다.
- (8)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농업협동 조합이 처리한 분은 2.5%를 가산 지급한다.
- (9) 이 요율은 2016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 부터 적용한다.

13. 해송 운임

1) 양 곡

(단위 : 원, 3급품 톤/마일당)

거 리	요 율		
1~20 마일	146.85		
21~50	70.59		
51~100	14.28		
$101 \sim 200$	12.73		
201~400	11.66		
401 이상	8.49		

2) 포장재

(단위 : 원/속)

거리	P. P 대 40kg들이	P. P 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P. E 대 10kg들이	P. E 대 4kg들이	P. P 대 톤백들이
1~20 마일	17.97	6.86	11.99	4.22	3.52	30.72
$21 \sim 50$	8.64	3.29	5.75	2.03	1.69	14.77
51~100	1.74	0.66	1.16	0.40	0.34	2.98
101~200	1.55	0.59	1.03	0.36	0.30	2.65
201~400	1.43	0.54	0.95	0.33	0.28	2.44
401 이상	1.03	0.39	0.68	0.24	0.20	1.77

- (1) 양곡의 운임 계산방법은 해운항만청이 고시한 "내항 화물선 운임 규정"에 의하되 화물 등급상의 인수(因數)와 화물톤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화물 등급은 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등급표(백미, 외미, 소맥 등은 52, 소맥분은 57, 대맥, 조미는 65, 두류는 84 등)에 의하되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곡종의 화물인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현미·정맥·조·수수 52, 압맥(압소맥)·밀쌀 65, 옥수수 84, 혼합곡 55
 - 나) 화물 톤수의 계산방법은 동 규정 제13조에 의하며, 정미중량에 포장재료 중량을 가산 적용하되 포장재료 중량은 40kg들이 P.P대는 0.14kg, 20kg들이 P.P대는 0.08kg, 20kg들이 지대는 0.18kg, 톤백들이 P.P대는 2.5kg으로 한다.
- (2) 운항구간이 20마일 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20마일을 최저운임으로 한다.
- (3) 양곡의 적재중량은 kg까지로 한다.
- (4) 포장재 운임에는 화물등급 할증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 (5)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보관료』 항목의 단량을 기준으로 한다.
- (6) 해양수산부 고시(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규정)에 의한 화물입항료의 기본료는 동 고시에 의하여 실비 정산한다.

- (7) 해송운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강화군의 해송분은 200%, 경상북도 울릉군 해송분은 50%,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및 전라남도 신안군 해송분은 150%,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화정면·돌산면, 고흥군 봉래면, 완도군(군외면 제외), 진도군 조도면 지역의 해송분은 100%, 전라 북도 부안군 위도면 해송분은 200%,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면은 100%, 사량면은 50%의 도서할증을 각각 작용하고 기타 지역은 동 규정 제7조에 의한다.
- (8)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9) 이 요율은 2016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 부터 적용한다.